

#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500호)

## 예비심사보고서

1998. 9. 26.
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31 고성군수  
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8  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9. 26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 
특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(총괄) : 불임내역 참조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결산에 대한 승인안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회계년도의 집행사항을  
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하는 것으로  
○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 
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 
실시한 안건으로  
○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, 재무회계규칙,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 
부합되게 작성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,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, 재무관리의  
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9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